2025. 7. 23.(수) 10:00
본 회 의 장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완 도 군 의 회

☐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심사결과
제3440호	’25. 7. 7.	박성규 의원 외 8명	’25. 7. 14.	’25. 7. 14.	원안가결
제3441호	’25. 7. 7.	박성규 의원 외 8명	’25. 7. 14.	’25. 7. 14.	원안가결
	이	하	빈	칸	

【의안번호 제3440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7. 7. 박성규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5. 7. 14.

다. 상정일자 : 2025. 7. 1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회의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허가권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출장계획서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심사기준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예산 편성 · 집행 및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완도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완도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완도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도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5일간 완도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완도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완도군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라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완도군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및 제9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급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 X]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3.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장 김귀창 / 담당자 박영준 주무관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안번호 제3441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7. 7. 박성규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5. 7. 14.

다. 상정일자 : 2025. 7. 1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25. 7. 1.자로 완도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단장' 추가 (안 제2조제1항제2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자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라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과장”을 “과장, 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범위) ①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장, 담당관, 과장 3.·4. (생 략) ② (생 략)	제2조 (범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과장, 단장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행정자치위원회

□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심사결과
제3442호	2025. 7. 3.	지 민 의원	2025. 7. 14.	2025. 7. 14.	원안가결
제3443호	2025. 7. 3.	조인호 의원	2025. 7. 14.	2025. 7. 14.	원안가결
제3444호	2025. 7. 7.	완 도 군 수	2025. 7. 14.	2025. 7. 14.	원안가결
제3445호	2025. 7. 7.	완 도 군 수	2025. 7. 14.	2025. 7. 14.	원안가결
제3446호	2025. 7. 7.	완 도 군 수	2025. 7. 14.	2025. 7. 14.	원안가결
제3447호	2025. 7. 7.	완 도 군 수	2025. 7. 14.	2025. 7. 14.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442호】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7. 3. 지 민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7. 14.

다. 상정일자 : 2025. 7.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안 제3조, 안 제4조)
- 운영비 등 지원(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마을 공동 세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 해소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이란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란 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을 말한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면의 취약계층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운영방법) ①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사회복지시설, 읍·면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빨래방을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443호】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7. 3. 조인호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7. 14.

다. 상정일자 : 2025. 7.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회 운영(안 제9조, 안 제10조)
- 윤리 헌장 및 행정지원 등(안 제12조, 안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14조, 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기술 남용이나 윤리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 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차별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완도군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계 부서 담당 과장
2.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내
3.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4. 인공지능사업자
5. 인공지능이용자
6.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윤리 헌장) 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의 윤리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 1. 22.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3444호】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7. 14.

다. 상정일자 : 2025. 7.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현행 직제 및 실과장명을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도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현행화(안 제3조제2항)
  - 해양치유담당관 → 관광실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직제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치유담당관”을 “관광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445호】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7. 14.

다. 상정일자 : 2025. 7.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무분별한 홍보대사 위촉을 막기 위함
-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군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홍보대사 재위촉 조건 변경(안 제3조제2항)
  - 임기 경과 시 별도 통보 없이 위촉 해제
  - 적극적인 홍보 활도 수행자 재위촉 가능
- 홍보대사 활동 시 특산물 지원 추가(안 제7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홍보대사의 재위촉 조건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완도군 홍보대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정 홍보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간 경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경비를 지급”을 “경비 및 특산물을 지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제 - 호

위 촉 장

성 명

건강의 섬 완도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우리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귀하를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 ○ ○

붙임2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제 -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해양치유 완도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우리 군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귀하를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 ○ ○

【의안번호 제3446호】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7. 14.

다. 상정일자 : 2025. 7.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정 당시와 달리 본 조례의 역할과 중복되는 유사한 법규인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2020. 9. 25.)와 「완도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2011. 11. 28.), 「완도군 일상감사 규정」(2011. 7. 11.)등이 신설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중복되는 유사한 법규와 역할이 대체되는 신설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447호】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7. 14.

다. 상정일자 : 2025. 7.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안 제4조 ~ 안 제6조)
- 지원신청, 지원결정, 비용청구(안 제7조 ~ 안 제9조)
- 업무의 위탁, 지원결과 관리, 비용환수(안 제10조 ~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 등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례 수행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수사(搜査)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완도군민 여부 등 장례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청구)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결과 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	구 분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무연고자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인적사항	○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사망일자: ○장례일자:		
장 례 수 행 자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공영장례 지원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	사 망 자 인적사항	○ 주소: ○ 성명: (남/여) ○ 생년월일:		
	장례수행자			
	지원 한도액	천원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관인)

[별지 제3호서식]

완도군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	사 망 자	○ 주 소: ○ 성 명: (남/여) ○ 생년월일:		
	장 례 처 리	○ 화장일자: ○ 안치장소:		
	수 행 업 체	○ 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집행액 계			
	장례비용			
	기타잡비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별지 제4호 서식]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완도군 공영장례지원 시신처리 위임서

위임자 (연고자)	성 명		주민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주 소			
	국 적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사망일자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				
위 임 내 용		시신의 처리(화장 · 봉안)		
위 임 사 유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완도군수 귀하

산업건설위원회

□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심사결과
제3448호	'25. 7. 3.	조영식 의원	'25. 7. 14.	'25. 7. 14.	원안가결
제3449호	'25. 7. 7.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450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451호	〃	완 도 군 수	〃	'25. 7. 14. '25. 7. 17.	보 류 찬성의견
	이	하	빈	칸	

【의안번호 제3448호】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7. 3. 조영식 의원

나. 회부일자: 2025. 7. 14.

다. 상정일자: 2025. 7. 1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안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책무 및 재정지원(안 제3조, 안 제4조)
-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자원낭비를 예방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완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완도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 ①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제344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7. 14.

다. 상정일자: 2025. 7. 1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성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조항 변경(안 제12조제1항)
- 위원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성별 구성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2조(구성) ①----------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 제3450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7. 14.

다. 상정일자: 2025. 7. 1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자율방재단의 연임규정 개정을 통한 내실있는 활동 여건 마련
- 행정안전부 인감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현행에 맞지 않는 서식 등 일부 수정

나.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의 연임규정 개정(안 제5조제6항)
-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해산 내용 변경(제7조제2항)
- 재해보상 청구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별지 제7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연임 제한을 완화 및 협의회 성별 구성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감축계획에 따른 구비서류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하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⑤ (생 략)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 ---------- 하되, ----------.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생 략)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단장 및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② ---------- ---------- ----------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재단원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삭 제>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붙임 1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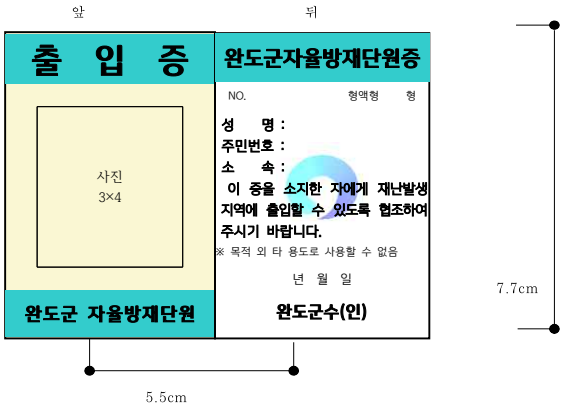
뒤

붙임 2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앞



뒤

붙임 3 현 행

■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 장해 〔 〕, 장제 〔 〕, 유족 〔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완도군 안전건설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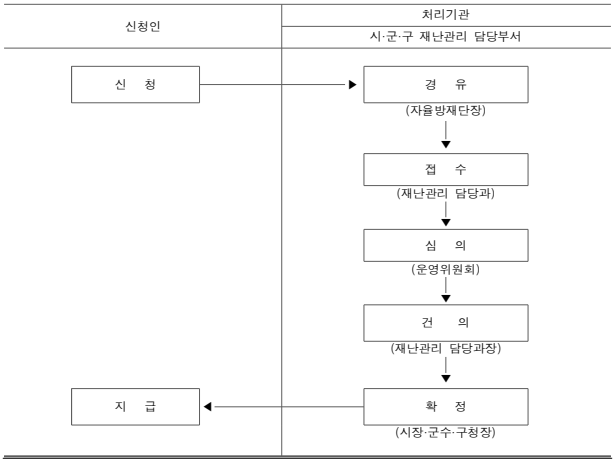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붙임 4 개 정 안

■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 장해 〔 〕, 장제 〔 〕, 유족 〔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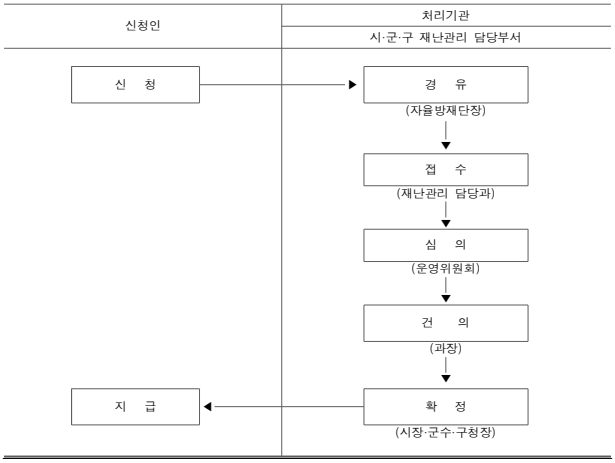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의안번호 : 제3451호】

2035 완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7. 14.

다. 상정일자

- 제1차 회의(2025. 7. 14.)
- 제2차 회의(2025. 7. 23.)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 완도 군관리계획 수립 이후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의 지역여건 변화와 장래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 제시
- 난개발 방지, 읍·면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수립,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의 현실화를 위한 계획수립으로 '선계획·후개발'의 기틀 마련
- 이러한 계획배경을 바탕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군계획시설 등 완도군 군관리계획 기정사항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완도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 위　　치 : 완도군 행정구역 전역
  - ○ 면　　적 : 395.1㎢(해면부 제외, 3읍 9면)
  - ○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2025년 / 목표연도 2035년
  - ○ 과업기간 : '22. 3. 8 ~ '25. 7. 30(행정절차 이행기간 미포함)
- **결정(변경) 내용**
  - ○ 용도지역 : 상위계획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변경 지정
  - ○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확장
  - ○ 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 ○ 군계획시설 : 군정책사업 및 현황여건, 군재정현황 등을 고려한 신설·변경·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의견

- 제1차 회의: 보류
- 제2차 회의: 찬성의견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1. 장기발전구상(안) 1부.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부.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예시 1부.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1부.　끝.

<붙임 1>

장기발전구상(안)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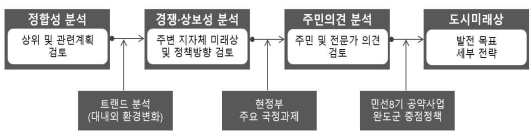
○ 2035년 완도군의 도시미래상 구현을 위하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그리고 기존 군관리계획 등을 검토하고

○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정책방향 등을 수용하여 계획인구에 부합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상, 발전목표 설정 및 목표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장기발전을 위한 미래상, 목표, 전략 등의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의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며, 각 프로세스에서 도출되는 핵심키워드를 종합하여 도출하고자 함

- 키워드 도출을 위한 주요 프로세스는 정합성 분석(상위 및 관련계획), 완도군과의 경쟁 또는 상호보완성 분석(주변 지자체 미래상 및 정책방향), 주민의견분석(주민 및 전문가 의견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고
- 이를 보완하고자 트랜드분석(대내외 환경변화),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완도군 중점정책 등을 검토하여 핵심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함

○ 도출된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완도군의 미래상과 발전목표 등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 완도군 미래상 및 발전목표 설정과정

2. 도시미래상 설정

대한민국 치유1번지! 청정완도

1) 미래상 설정 배경

○ 지방도시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어메니티를 기반으로 브랜드화,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깨끗한 환경·친환경 농수산물이라는 청정 이미지는 완도군이 계속 가져가야할 대표 이미지 및 브랜드임

○ 치유산업은 2017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관련기반 조성 및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까지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위 두가지 개념을 완도의 미래상으로 하여 "대한민국 치유1번지! 청정완도"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자 함

2) 발전목표 설정

가.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국내최고의 【해양치유도시】

○ 최근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치유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천혜의 해양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치유도시 조성

○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과 치유산업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국내 최고의 해양치유도시로서의 기반 구축

나. 섬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역사문화관광도시】

○ 다도해 섬관광 휴양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광객들의 체류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해양관광거점도시로서의 기반 구축

○ 완도만이 보유하고 있는 청해진, 고산 윤선도 유적, 청산도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해양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해양바이오산업도시】

○ 청정해역의 친환경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치유산업과 연계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도시로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

○ 풍부한 해양수산자원(다시마, 전복, 미역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과 융복합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

라. 육·해상교통망 확충으로 【해양교통중심도시】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2030년),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27호선, 2030년) 연도교 건설 예정 등을 통해 남해안 해양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조성

○ 완도항을 중심으로 제주도나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해양교통망과 완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중인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조성을 통해 미래 해양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

3. 계획인구 설정

○ 완도군의 인구피라미드 분석을 보면 인구구조상 전출가능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인구감소율 또한 둔화

○ 향후 2035년까지의 사회적 변화와 미래 인구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완도군 인구지표는 자연+사회적 증가인구를 조정한 51,000인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추계인구로 설정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인구설정		44,000	46,000	51,000
자연적 증가인구	적 용	44,041	46,181	51,322
	집단생잔법	44,459	43,934	47,091
	모형 방법	49,117	46,783	44,499
사회적 증가인구	적 용	-418	2,247	4,231
	해양치유화산업계획	200	873	873
	귀농·귀어인구	1,816	3,632	5,448
	전출인구	-2,434	-2,258	-2,090

4. 도시공간구조 구상

1) 중심지체계

○ 1도심 : 완도의 중심기능 수행

- 완도 : 행정·상업·관광·교통·해양치유의 중심, 중생활권중심지

○ 2지역중심 : 생활권의 중심기능수행

- 노화 : 문화·역사·관광연계 섬문화관광의 거점
- 금일 : 산업·관광·복지 융합형 해조류 6차 산업의 거점

2) 개발축 설정

가. 도시발전축(Y축)과 지역성장축(X축) 설정: 해남, 강진군과 연계되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도시발전축 구상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과 국도13호선 확장으로 광주-전라남도 중부권역-완도간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광역접근성 개선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등 주변 도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도시발전축을 해남군-군외면-완도읍으로 설정

○ 강진군-고금면(약산, 금일, 금당)-신지면-완도읍을 연계시키는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지역성장축으로 설정. 현재 완도읍과 신지면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치유산업을 미래에는 완도서부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발전축이 교차하는 완도읍은 도시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지역으로서 완도읍이 도시성장과 발전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심성을 강화함

- 완도읍의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남군 의존적인 서부 도서지역(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등)과 강진군 의존적인 동부 도서지역(고금면, 약산면, 금일읍 등)을 완도군과 연결시키는 해상교통을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함
- 완도읍의 중심성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강진군과 해남군에 의존적인 완도군내 행정구역 지역은 점차 완도읍 중생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나. 성장유도축 및 관광산업축 설정: 노화를 중심으로한 성장유도축, 청산을 중심으로한 관광산업축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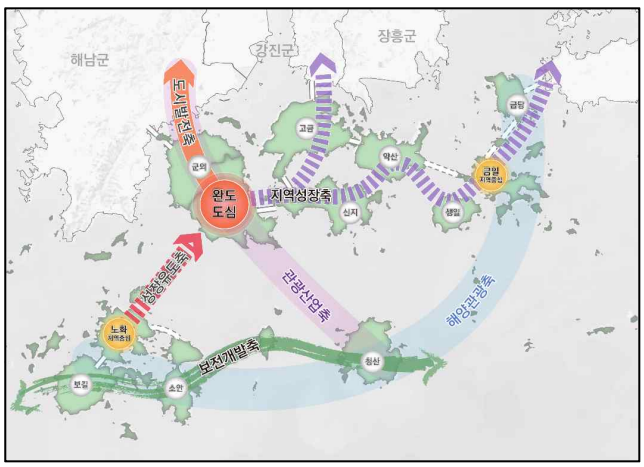
○ 완도군 역사문화관광의 중심기능과 노화-소안간 연도교 신설로 인한 노화-소안-보길 생활권의 성장을 고려하여 노화를 중심으로한 성장유도축으로 설정

○ 완도군 대표 지역축제인 완도읍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등 관광객의 많은 유입을 고려하여 완도읍과청산도를 연결한 관광산업축 구상

다. 해양관광축: 보길도-소안도-청산도-금당도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축 구상

○ 윤선도 등 역사문화관광 보길도, 가고 싶은 섬 소안도, 슬로시티 청산도, 자연의 섬 금당도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연결하는 해양관광축 구상

○ 해양관광축을 연결하는 크루즈 노선 확보 등을 통해 연근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해양관광자원 연계



5. 생활권 설정

가. 생활권 위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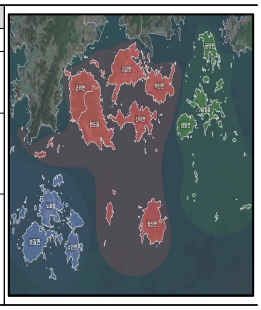
○ 기존 계획 등에서 도출된 생활권 설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재검토

- 향후 인구증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인구규모, 관련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완도군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중생활권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완도읍, 노화읍, 금일읍은 중생활권 중심지에서 소생활권 중심지로 설정하고 기초생활권의 범위를 조정함
- 완도읍에서 강진군 마량면으로 연결되는 연륙연도교 현황을 고려하여 완도읍에 해당하는 기초생활권은 신지면과 연도교로 연결되는 고금면, 약산면을 완도읍 생활권으로 조정하여 완도읍의 중심성을 강화

○ 생활권 설정의 기본단위인 기초 생활권이 변화됨에 따라 공간구조별 기능 및 추진사업 등을 고려한 생활권별 개발방향을 재검토

나. 생활권 설정

구 분	주요내용
개념	1개 중생활권, 3개 소생활권
생활권 구분	•중생활권: 완도군 •소생활권: 완도읍생활권(지역중심), 노화읍생활권, 금일읍생활권
기대 효과	•기정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생활권계획의 현실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 대상시설을 기준으로 현실에 근접한 생활권 배분 가능
인구 배분	생활권 구분 / 인구 (현황(인), 계획(인), 구성비(%)) 합계 47,597 51,000 100.0 완도읍 32,470 36,465 71.5 노화읍 9,880 5,049 9.9 금일읍 5,247 9,486 18.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	비고
총 계			1,079,850,922	증) 6,620,934	1,086,471,856	100.00	
도시지역	합 계		26,633,097	감) 12,408	26,645,505	2.45	
	주거지역	소 계	2,670,256	증) 44,805	2,715,061	0.25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0.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4,609	증) 44,805	1,949,414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612,115	-	612,115	0.06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90	-	41,390	0.00	
		준주거지역	112,142	-	112,142	0.01	
	상업지역	소 계	601,803	-	601,803	0.06	
		중심상업지역	-	-	-	0.00	
		일반상업지역	601,803	-	601,803	0.06	
		근린상업지역	-	-	-	0.00	
		유통상업지역	-	-	-	0.00	
	공업지역	소 계	530,819	증) 1,764	532,583	0.05	
		전용공업지역	-	-	-	0.00	
		일반공업지역	-	-	-	0.00	
		준공업지역	530,819	증) 1,764	532,583	0.05	
	녹지지역	소 계	19,293,348	감) 32,528	19,260,820	1.77	
		보전녹지지역	1,341,516	-	1,341,516	0.12	
		생산녹지지역	1,270,797	-	1,270,797	0.12	
		자연녹지지역	16,681,035	감) 32,528	16,648,507	1.53	
	미 지 정		3,536,871	감) 1,633	3,535,238	0.33	해면부
도시지역 외의 지역	합 계		1,053,217,825	증) 6,608,526	1,059,826,351	97.55	
	관리지역	소 계	73,391,090	증) 2,733,522	76,124,612	7.01	
		보전관리지역	14,563,186	증) 40,794	14,603,980	1.34	
		생산관리지역	27,319,129	증) 1,069,030	28,388,159	2.61	
		계획관리지역	31,508,775	증) 1,623,698	33,132,473	3.05	
	농 림 지 역		146,335,931	감) 767,155	145,568,776	13.40	
	자연환경보전지역	소 계	833,490,804	증) 4,642,159	838,132,963	77.14	
		육 지 부	152,546,423	증) 4,636,189	157,182,612	14.47	
		해 면 부	680,944,381	증) 5,970	680,950,351	62.68	
미 지 정	신규지적 생성지		3,530,901	감) 3,530,901	-	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구 분		기 정 개소	기 정 면적(㎡)	변 경 개소	변 경 면적(㎡)	변 경 후 개소	변 경 후 면적(㎡)
합 계		82	5,411,798	-	-	98	5,776,602
경관지구	특 화	1	699,724	-	-	1	699,724
고도지구		1	31,822	-	-	1	31,822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1	138,760	-	-	1	138,760
취락지구	자 연	73	2,859,974	증) 16	증) 364,804	89	3,224,778
개발진흥지구	소 계	6	1,681,518	-	-	6	1,681,518
	산업·유통	1	559,722	-	-	1	559,722
	관광·휴양	4	1,044,150	-	-	4	1,044,150
	특정	1	77,646	-	-	1	77,646

3.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구 분	기 정 개소	기 정 면적(㎡)	변 경 개소	변 경 면적(㎡)	변 경 후 개소	변 경 후 면적(㎡)	비 고
합 계	5	257,350,988	-	감) 181,967	5	257,169,021	
도시자연공원구역	4	620,763	-	-	4	620,763	
수산자원보호구역	1	256,730,225 (218,899,021)	-	감) 181,967	1	256,548,258 (218,899,021)	0해면부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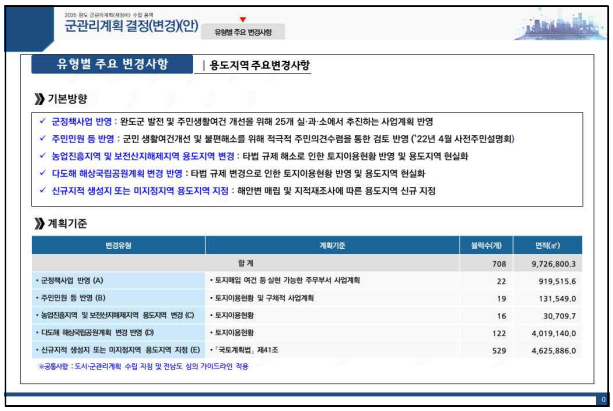
구 분	기 정 개소	기 정 면적(㎡)	변 경 개소	변 경 면적(㎡)	변 경 후 개소	변 경 후 면적(㎡)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	15	2,251,342.7	증) 3	증) 239,672.0	18	2,491,0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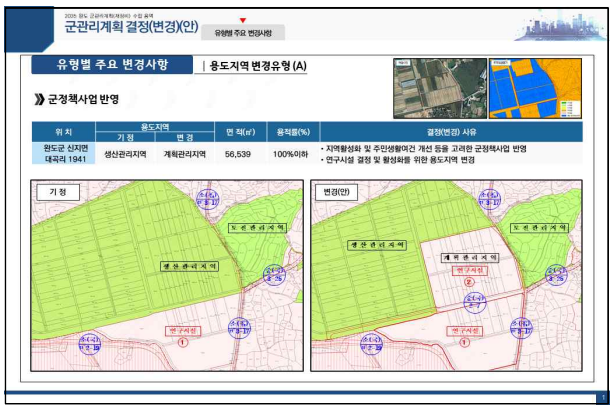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 설 명		기 정	증·감	변경 후 합 계	변경 후 존치	변경 후 폐지	변경 후 신설	변경 후 변경	변경 세부내용 연장 증가	변경 세부내용 연장 축소	변경 세부내용 면적(폭원) 변경
합 계		627	증) 10	637	612	3	13	12	1	1	10
교통시설	소 계	454	증) 6	460	451	1	7	2	1	1	-
	도 로	393	증) 6	399	390	1	7	2	1	1	-
	대 로	6	-	6	6	-	-	-	-	-	-
	중 로	59	증) 5	64	59	-	5	-	-	-	-
	소 로	328	증) 1	329	325	1	2	2	1	1	-
	궤 도	1	-	1	1	-	-	-	-	-	-
	항 만	27	-	27	27	-	-	-	-	-	-
	주 차 장	32	-	32	32	-	-	-	-	-	-
	자동차정류장	1	-	1	1	-	-	-	-	-	-
공간시설	소 계	55	감) 1	54	52	1	-	2	-	-	2
	공 원	17	-	17	16	-	-	1	-	-	1
	완충녹지	5	감) 1	4	4	1	-	-	-	-	-
	광 장	9	-	9	8	-	-	1	-	-	1
유통 및 공급시설		26	-	26	26	-	-	-	-	-	-
공공·문화체육시설	소 계	57	증) 3	60	55	1	4	1	-	-	1
	학 교	43	감) 1	42	41	1	-	-	-	-	-
	체육시설	2	증) 2	4	2	-	2	-	-	-	-
	문화시설	2	증) 1	3	2	-	1	-	-	-	-
	연구시설	1	증) 1	2	-	-	1	1	-	-	1
방재시설	소 계	10	증) 2	12	9	-	2	1	-	-	1
	유수지	5	증) 2	7	4	-	2	1	-	-	1
보건위생시설		2	-	2	2	-	-	-	-	-	-
환경기초시설	소 계	23	-	23	17	-	-	6	-	-	6
	폐기물처리시설	14	-	14	8	-	-	6	-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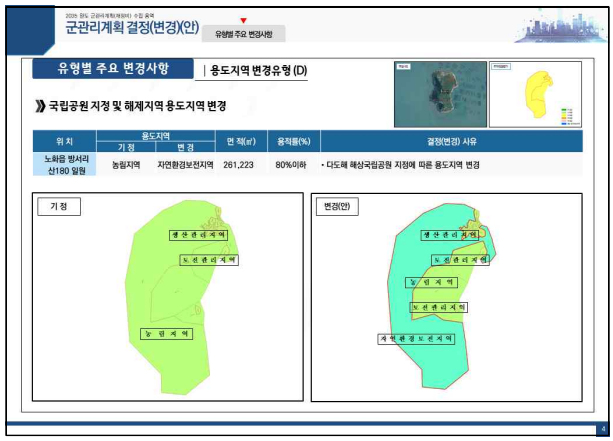
<붙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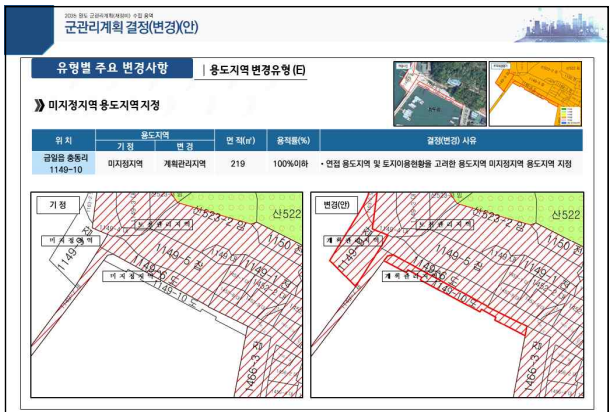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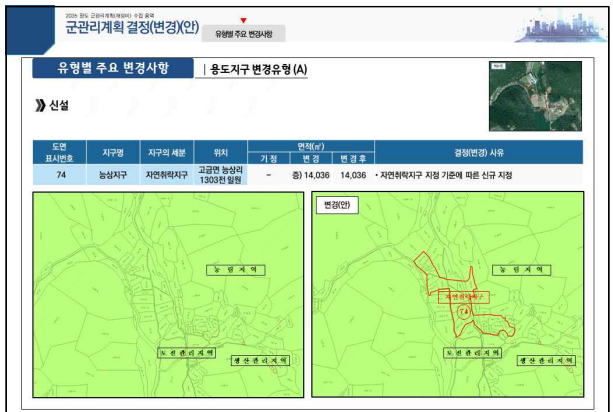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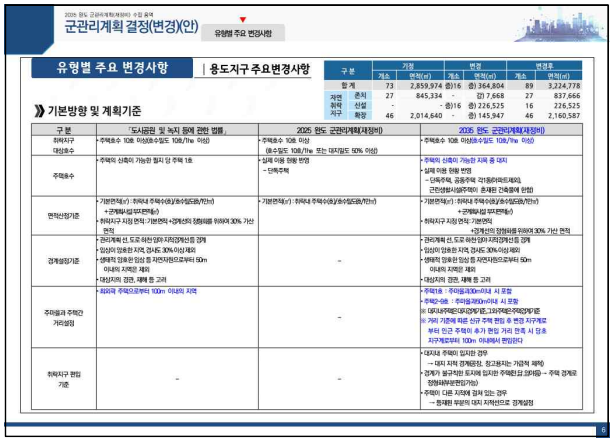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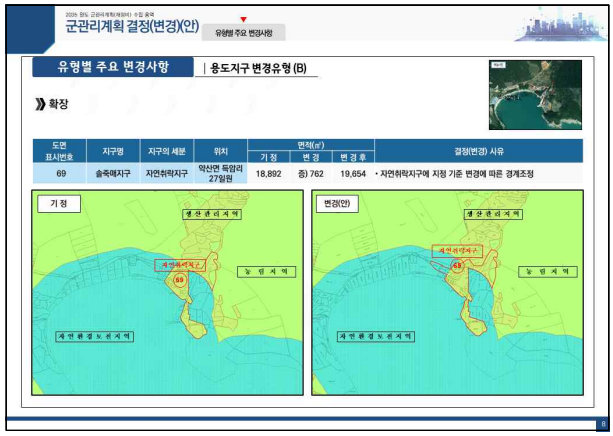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주요변경사항

》용도구역 주요변경사항

- ✓ 군정책사업 반영 : 완도군 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5개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반영
- ✓ 주민민원 등 반영 : 군민 생활여건개선 및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검토 반영('22년 4월 사전주민설명회)

》계획기준

변경유형	계획기준	블럭수(개)	면적(㎡)
합 계		5	181,967
• 군정책사업 반영 (A)	• 토지매입 여건 등 실현 가능한 주무부서 사업계획	3	156,130
• 주민민원 등 반영 (B)	• 토지이용현황 및 구체적 사업계획	2	25,837

※공통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전남도 심의 가이드라인 적용

》지구단위계획 주요변경사항

- ✓ 군정책사업 반영 : 완도군 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5개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반영

》계획기준

변경유형	계획기준	블럭수(개)	면적(㎡)
합 계		3	239,672
• 군정책사업 반영 (A)	• 토지매입 여건 등 실현 가능한 주무부서 사업계획	3	239,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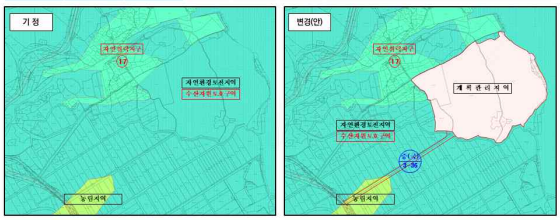
※공통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전남도 심의 가이드라인 적용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 용도구역 변경유형 (A)

》군정책사업 반영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 정	면적(㎡) 변 경	면적(㎡) 변 경 후	결정(변경) 사유
1	수산자원 보호구역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256,730,225	감) 181,967	256,548,258	• 지역활성화 및 군정책사업(관광단지) 추진을 고려한 용도구역 변경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 군계획시설 주요변경사항

》기본방향

- ✓ 군정책사업 반영 : 완도군 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5개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반영
- ✓ 주민민원 등 반영 : 군민 생활여건개선 및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검토 반영('22년 4월 사전주민설명회)
- ✓ 미집행시설 해소 및 추가지정 :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생활여건개선 및 불편해소

》계획기준

변경유형	계획기준	블럭수(개)	면적(㎡)
합 계		28	1,122,469.9
• 군정책사업 반영 (A)	• 토지매입 여건 등 실현 가능한 주무부서 사업계획	25	1,084,156.9
• 주민민원 등 반영 (B)	• 현황여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등	2	34,575
• 미집행시설 해소 및 추가지정 (C)	• 군계정 및 현황여건 등	1	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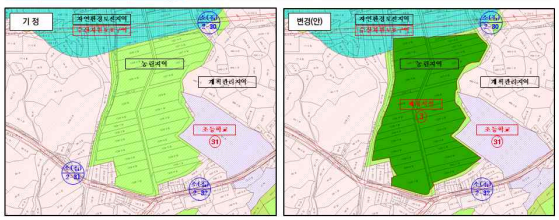
※공통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장기미집행시설 가이드라인 등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 군계획시설 변경유형 (A)

》군정책사업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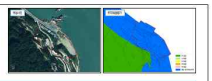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기 정	면적(㎡) 변 경	면적(㎡) 변 경 후	결정(변경) 사유
3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약산면 청룡리 1226-4 일원	-	증) 46,591	46,591	• 지역활성화 및 주민생활여건개선 등을 고려한 군정책사업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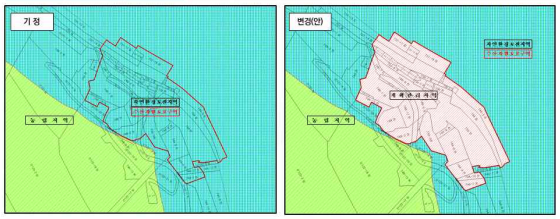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 용도구역 변경유형 (B)

》주민민원 등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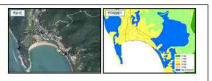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 정	면적(㎡) 변 경	면적(㎡) 변 경 후	결정(변경) 사유
1	수산자원 보호구역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256,730,225	감) 181,967	256,548,258	• 지역활성화 및 토지이용현황, 주민민원 등을 고려한 용도구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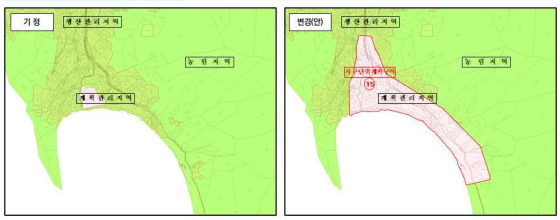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 변경유형 (A)

》구역 신설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 정	면적(㎡) 변 경	면적(㎡) 변 경 후	결정(변경) 사유
18	금곡지구	생일면 금곡리 238 일원	-	증)172,057	172,057	• 지역활성화 및 주민생활여건개선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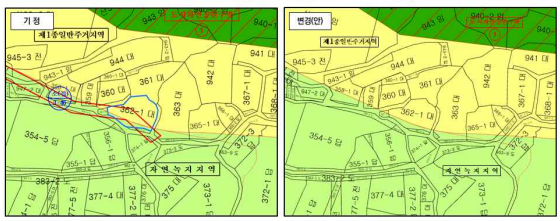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 군계획시설 변경유형 (B)

》주민민원 등 반영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 정	종 점	사용형태	결정(변경) 사유
폐지	소로	완3	46	6	집산도로	265	중로3-1 완도읍 가용리 356-1	중로2-1 완도읍 가용리 963-9	일반도로	• 미집행시설로 현황여건 및 군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선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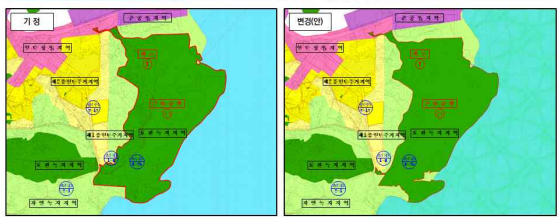


유형별 주요 변경사항 | 군계획시설 변경유형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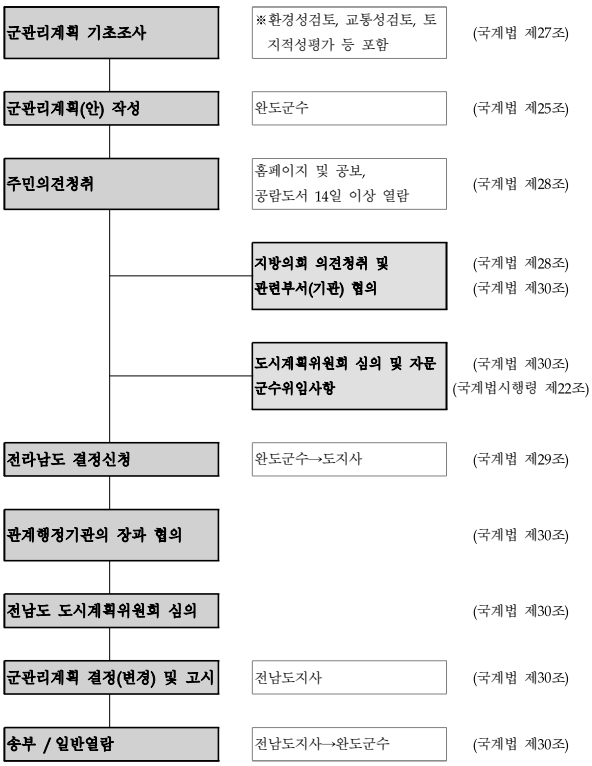
》미집행시설 해소 및 추가지정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기 정	면적(㎡) 변 경	면적(㎡) 변 경 후	결정(변경) 사유
11	동망공원	근린공원	완도읍 군내리 산105-1일 일원	645,213	감) 32,985	612,228	•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민원에 따른 시설결정 전 사용 중이던 사유지 제척



<붙임 4>


군관리계획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등 포함
(국계법 제27조)
군관리계획(안) 작성
완도군수
(국계법 제25조)
주민의견청취
홈페이지 및 공보,
공람도서 14일 이상 열람
(국계법 제28조)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국계법 제28조)
(국계법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군수위임사항
(국계법 제30조)
(국계법시행령 제22조)
전라남도 결정신청
완도군수→도지사
(국계법 제29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계법 제30조)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계법 제30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전남도지사
(국계법 제30조)
송부 / 일반열람
전남도지사→완도군수
(국계법 제30조)